

3. 자산관리규정 시행세칙 신규대비표

현행 규정	개정안	수정 이유
제 2 조(적용범위) 불용품, 손망실 처리 및 자산이전사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<u>자산관리세칙</u>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	제 2 조(적용범위) 불용품, 손망실 처리 및 자산이전사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<u>본 세칙</u>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	단순 문구수정
제 5 조(불용결정의 기준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품 처리를 한다. 1. ~ 9. (생략)	제 5 조(불용결정의 기준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품 처리를 한다. 1.~9. (현행유지) 10. 기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교체해야 하는 경우	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하는 경우, 내용연수에 미달하더라도 불용이 가능하도록 불용결정 기준 추가
제 8 조(불용결정의 절차) 불용결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. 1. 운영부서장은 관리, 사용하고 있는 자산중 불용결정기준에 해당하는 물품 및 유휴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타부서의 사용가능, 소요유무를 조사한 후 제7조에 의거 그 상태를 분류하고 업무전결규정에 의거 <u>전산상 (POVIS)으로</u> 신고하여야 한다. 2.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불용 처리하여 그 결과를 운영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3. (생략)	제 8 조(불용결정의 절차) 불용결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. 1. 운영부서장은 관리, 사용하고 있는 자산중 불용결정기준에 해당하는 물품 및 유휴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타부서의 사용가능, 소요유무를 조사한 후 제7조에 의거 그 상태를 분류하고 업무전결규정에 의거 전산상 (POVIS)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2.총괄부서장은 제1 <u>호</u> 의 의뢰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불용 처리하여 그 결과를 운영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3. (현행유지)	단순 문구수정
제 21조(변상집행) ① 손망실에 대하여는 일시 현금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. ② (생략)	제 21조(변상집행) ① 손망실에 대하여는 일시 현금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변상금액이 과다하여 일시 현금 변상이 곤란한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분납할 수 있다. ② (현행유지)	과다 변상금 분납 가능근거 마련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00월 00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